

第13回서울特別市議會(定期會)

内務委員會會議錄 第6號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

日 時：1995年12月19日(火) 午後3時

場 所：内務委員會會議室

議事日程

1. 公益情報提供者保護等에 관한條例制定에 관한請願

審査된案件

1. 公益情報提供者保護等에 관한條例制定에 관한請願(李智文議員 紹介) 1面

(15時 24分 開議)

○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.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定期會 第6次 内務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乙亥年도 저물어 가고 있는 年末이 닥쳤습니다. 委員님께서 地域區 議政活動을 비롯하여 公사다망한 年末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, 議政活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
그러면 案件을 上程하겠습니다.

1. 公益情報提供者保護等에 관한條例制定에 관한請願(李智文議員 紹介)

○委員長 吳世根 議事日程 第1項 公益情報提供者保護等에 관한條例 制定에 관한 請願을 상정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本 請願을 소개한 李智文議員께서는 國會法司委員會에서 99人의 連署로 内部告發者保護等에 관한特別法이 提出, 審議中에 있으므로 請願 條例 制定의 必要性이 없기 때문에 提案說明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請願人의 提案說明은 생략합니다.

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.

公益情報提供者保護等에 관한條例 制定에 관한請願에 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가. 趣旨와 理由

○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현시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및 취급자,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제조 또는 기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가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,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무수행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공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하여도 공익에 유익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도하에서는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청원은 그 취지는 바람직한 이유가 있으나, 조례제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.

나. 問題點

1) 條例制定權의 範圍

○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법령우위의 원칙

조례는 법령에 위배될 수 없는 원칙으로, 조례는 법률과 법규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법령이 정한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되는 것을 말함.

○법률유보의 원칙

조례의 제정은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

2 (第13回—内務第6次)

<p>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</p> <p>○조례안 제6조(신변의 보호)에는 공익정보제공의 접수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위반시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, 조례안 제7조(신분의 보장)에는 고용인이 공익정보제공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,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됨.</p> <p>2) 事務의 範圍</p> <p>○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</p> <p>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음.</p> <p>○조례안 제9조(구체방법)에는 고용인이고용자로부터 불이익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 경우 소송 또는 민원제기 등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</p> <p>제10조(구체의 내용)에는 연체임금의 지급 등 직위관련 모든 편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,</p> <p>제11조(구체의 신청)에는 구제를 위한 민원제기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.</p> <p>○이와 같은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인 행정심판법, 행정소송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과의 서로 저촉되는 사항으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항으로 사료됨.</p> <p>3) 條例의 效力</p> <p>○조례안 제12조(조례의 효과제한)에는 이 조례의 내용은 고용자와 고용인간의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.</p> <p>○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서</p>	<p>울시 직영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조례의 효력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,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될 때에는 본 조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 제정 체계로 보아 조례로서 상위법률과 저촉되는 위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</p> <p>4) 内部告發者 保護 等에 關한 特別法 制定</p> <p>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'95. 3. 2. 99명의 국회의원이 연서로 제출한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자에 대한 보호와, 그 비리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업무진행의 일체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청원의 조례취지와 유사할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특별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본 조례 청원의 취지가 수용될 것으로 전망됨.</p> <p>다. 結 論</p> <p>○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 관한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,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 제정 범위를 일탈할 뿐 아니라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며,</p> <p>○현행 법률과의 저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가 수용될 것으로 전망됨.</p> <p>○지방자치법 제67조(청원의 심사처리)제3항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 규정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,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質疑나 討議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십시오.</p> <p>金東洙委員 質疑해 주십시오.</p>
--	---